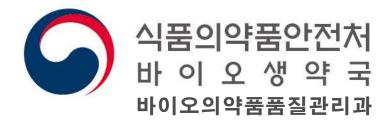


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지침 관련 질의·답변

2023, 12,



목 차

.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관련 질의ㆍ답변1
1-1. 데이터 완전성 평가방안1
1-2. 평가기준 '1의2 품질경영'2
1-3. 평가기준 '2.2 자동화장치 등의 관리'5
1-4. 평가기준 '5.1 문서의 작성'16
1-5. 평가기준 '5.2 문서의 관리'17
1-6. 평가기준 '7.1 시험관리'18
1-7. 평가기준 '13. 자율점검' 24
.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이행 관련 질의·답변25

1 │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질의·답변

1. 데이터완전성 평가방안

- 1) 오류기록에 대한 중간검토자 및 최종승인자의 검토, 서명한 경우 이를 불인정한다는 의미는?
- ⇒ 식약처 점검 시 허위라고 판단되는 기록이 발견된 경우, 업체에서 오류 기록이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중간검토자와 승인자가 검토 · 서명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불인정
- 2) 오류 기록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실수로 입력된 자료 (오류 기록)로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?
- ⇒ 오류 기록에 대해서는 식약처 점검자가 허위·조작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며, 동 평가지침은 GMP 기록에 대한 중간검토자와 승인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데이터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므로 중간 검토자 등은 시험 결과와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
- 3) 오류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문서의 적용범위?
- ⇒ 원칙적으로 '오류기록 불인정' 문서 적용 범위는 모든 GMP 문서를 의미함. 다만, 식약처 점검 시 사안에 따라 문서 적용범위를 판단할 수 있음

2. 평가기준 '1의2 품질경영'

- 1) 전담조직이란?
- □ 원칙적으로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은 신설해야 함. 다만, 현재 QA 등 기존 부서에서 데이터 완전성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의 책임 하에 데이터 완전성 관리 업무만을 하는 별도의 T/F 조직 형태로 운영하면 인정
- 2) 경영진의 범위를 공장장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?
- ⇒ 경영진은 대표자를 포함한 회사경영을 책임지는 인원을 의미하므로 공장장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대표자를 포함해야 함
- 3) '데이터 완전성 관리 업무만을 하는 별도의 T/F 조직'은 업무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데이터 완전성 관리 업무만을 하는 조직을 의미 한다면 원칙적으로 신설해야 하는 전담 조직과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는지?
- □ 별도의 T/F 조직은 업체 사정에 따라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임시적인 대안이며, 경영진의 책임 하에 데이터 완전성 관리 업무만을 별도로 수행하는 조직의 성격은 동일함

- 4) 임시적으로 T/F를 QA부서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향후 전담 인력이 담당하도록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지?
- □ QA 부서원으로 데이터 완전성 T/F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나, 데이터 완전성 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여야 함
- 5) 데이터 완전성 전담조직의 구성원은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IT 업무 담당자로만 구성해야 하는지?
- □ 데이터 완전성 전담조직 구성 시 IT 업무 담당자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IT 업무 담당자의 포함여부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구성하여야 함
- 6) 데이터 완전성 관리 업무는 전담하는 담당자 1명을 지정·운영해도 되는지?
- 우리처의 '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'에 충족하는 데이터 완전성 관리 업무를 위해 업체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함

- 7) 시험자가 직접 관찰하는 시험 등 데이터 완전성 확인 및 재구성을 위한 추적에 취약한 시험항목의 위험평가에 따라 도출된 방법 으로만 시험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?
 - 모든 시험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지 않고, 품질위험관리(QRM) 결과에 따라 도출된 방법대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되는지
- ☆ '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'의 기본 원칙은 모든 GMP 기록에 대한 근거자료는 보관하여야 하며, 보관방법은 업체 자체적으로 정하여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. 즉, 품질위험관리(QRM) 결과에 따라 도출된 시험방법이 식약처가 정한 '데이터 완전성 GMP 평가 기준'을 만족해야 함
- ⇒ 특히 전체 시험항목 중에서 데이터 완전성 확인 및 재구성의 추적이 취약한 시험항목(육안확인 시험 등)에 대해서는 품질위험 관리(QRM)를 통한 시험의 재구성이 가능한 방법을 도출해야 함
- 8) 시험의 재구성을 위해 사진촬영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?
 - 공정 중 세포 성장상태나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미경 관찰 사진도 데이터 완전성 확인 대상인지
- □ GMP 준수를 위한 모든 시험의 근거자료는 데이터 완전성 평가 기준 대상이며, 중간검토자가 시험의 실제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진 또는 사진촬영에 준하는 수준의 근거자료(해당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)의 보관이 필요함

- 9) 시험량 대비 시험에 필요한 적정인력 운영에 대한 품질위험관리 (QRM)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?
 - 출하 및 생산 건수에 따른 종업원 필요 수 산정표, 업체 자체 인력 운영 평가계획 등을 활용 가능한지
 - 일정주기로 생산량, 시험량, 시험오류, 추가 인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경영진 회의를 통해 평가하고 문서화 한다면, "품질 위험관리(QRM) 방식을 통한 필요인력 산출" 방법으로 인정 가능한지
- ⇒ 품질위험관리(QRM) 방식은 업체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실시 하여야 하며, 그 방법이 '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'의 기본원칙에 타당 하다면 인정 가능

3. 평가기준 '2.2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'

- 1) '자동화장치'와 '컴퓨터화시스템'의 차이는?
- ☆ 컴퓨터화시스템은 컴퓨터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외에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제어를 받는 기기설비나 주변 장치 또는 네트워크와 운영 인력이 함께 구성되어 운영되는 통합적 구성을 말하며, 자동화장치는 컴퓨터화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임
 - * [참고] 「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」 2.2 자동화장치 등의 관리, [별첨2] 컴퓨터화시스템

2) 데이터 교환이란?

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절차

- □ 데이터 교환은 데이터 이관(migration) 및 전송(transfer)을 의미함 □ (데이터 이관) 하나의 내구성이 있는 저장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
 - □ (데이터 전송) 서로 다른 데이터 저장 유형, 형식 또는 컴퓨터 시스템 간 데이터를 옮기는 절차
- 3) 데이터 교환(이관, 전송) 내장 기능 등을 시스템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확인하여 보증한 경우에도 기준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?
- □ 데이터 교환(이관, 전송) 기능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(CSV)과 정기적인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해야 함
- 4) 데이터 교환 전·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송된 것을 확인하는 점검 주기는?
- ⇒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(CSV)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데이터가 교환되는지 확인하면, 매 데이터 교환 시 데이터 확인 등을 점검할 필요는 없음

- 5) '데이터 교환 후 전자데이터의 내용 및 의미 변경 여부를 확인한 기록'에서 전자데이터의 범위는?
- ⇒ GMP 준수를 위한 모든 전자 형식의 자료가 전자데이터를 의미함
- 6)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 후 SD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기는 경우 동일성을 검증하여 원본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?
- □ 데이터 교환(이관, 전송) 시 데이터 교환 기능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(CSV)과 정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한다면 인정 가능
- 7) 데이터 백업(Back-up)의 방법을 월별 누적으로 해야 하는지? 월 단위로 백업해야 하는지?
- □ 백업(Back-up) 시스템에 대한 컴퓨터시스템밸리데이션(CSV)을 통해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백업 방식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타당 성을 입증하여야 함
- 8) Back-up 받은 저장장치(외장하드 디스크 등)의 적정한 완전성 점검주기는?
- □ 백업(Back-up) 받은 저장장치의 완전성 점검주기는 위험관리(Risk Assessment)를 통해 각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

- 9) '중요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'에서 중요한 데이터의 범위는?
- ⇒ 중요한 데이터의 범위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위험관리(Risk Assessment)를 통해 각 업체의 사정에 맞게 품질관리기준서에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GMP 데이터가 생성되는 모든 설비에 적용되어야 함
- 10) 데이터 입력 후 중간 검토자의 검토 시점은?
- □ 데이터 입력의 완전성 여부 검토는 제품 출하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함
- 11) 데이터 입력 후 전자적 방법으로 검토한 이력이 반드시 점검기록 (audit-trail)을 의미하는 것인지?
- ⇒ 검토이력은 반드시 점검기록(audit-trail)을 의미하지는 않으나, 실제 결과값과 작업원의 입력값이 정확한지 확인한 이력이 필요함
- 12) 기록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이란?
- 인터페이스에는 데이터 완전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정확하고 안전한 입력 및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자체 검사를 포함 하여 컴퓨터(PC)와 서버 간의 인터페이스, 서버와 서버간의 인터 페이스 등의 모든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시스템 특성에 맞도록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함

13) 정본(True Copy)란?

 □ 정본(True copy)이란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한 원본 기록을 복사하여 승인한 자료를 의미하며, 맥락, 내용 및 구조를 기술하는 데이터 등 정보가 원본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함 (예: 종이기록의 스캔본, 전자적인 데이터의 복사본)

14) 모든 기록에 대한 정본(True copy)을 준비해야 되는가?

- 데이터의 목적, 영향도를 고려하여 품질위험관리(QRM) 원칙으로서 위험평가(Risk Assessment)를 수행하여 그 적용대상을 정본으로 관리하여도 되는지?
- 동적기록(Dynamic data)이 아닌 정적기록(Static data)을 출력하여 원본으로 보관하더라도 문서스캔 등의 방식을 통한 정본으로 보관하여야 하는지?
- 시험 근거자료(데이터) 이외의 시험기록서에 대해서도 정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?
- 기준서, 계획서, 보고서 등의 중요문서 이외의 사용대장 등도 정본으로 보관하여야 하는지?
- ⇒ 기록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백업(Back-up) 및 점검기록 (Audit-trail)의 생성이 가능한 방법을 제외하고 모든 기록 문서는 정본(True copy)을 관리하여야 함

15) 정본의 생성주기 설정방법은?

→ 정본의 생성 주기는 위험평가(Risk Assessment)를 통해 각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

- 16) 감열지 같은 비영구적인 출력물 외의 모든 기록에 대한 정본 (True Copy)을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?
- ⇒ 출력물의 생성여부와 관계없이 기록에 대한 정본(True copy)을 보관하여야 함. 다만, 출력물이 생성되지 않거나 전자기록이 생성되지 않는 구형 시스템의 경우 출력물이 생성되는 장치 또는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
 - * (기타 기록관리 예시) 구형시스템의 결과값을 사진촬영하여 해당 사진자료 추적관리, 제3자의 시험에 대한 이중점검의 기록관리 등
- 17) 생산장비도 점검기록(Audit-trail) 검토가 필요한지?
- ⇒ 생산장비를 포함하여 점검기록(audit-trail)을 검토해야 함
- 18) 독립된 시험기기(저울, pH측정기 등)의 경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데이터의 생성, 변경, 삭제 추적이 가능한 경우, 점검기록 (Audit-trail)으로 인정 가능한지?
- □ 인터페이스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, 점검기록(audit-trail)이 유지 된다면 인정 가능함
- 19) 시스템 점검기록이 생성되지 않는 구형시스템의 경우, 데이터 추적관리 가능한 대안은?
- → 구형시스템의 추적관리는 GMP 기록의 생성, 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활동과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는 점검기록(audit-trail)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점검기록(audit-trail)이 생성되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

- 20) 구형시스템의 추적관리 대안이 점검기록과 동등한 효과임을 검증하는 보고서가 위험평가보고서와 정기검토로 충족되는지?
- □ 점검기록(audit-trail)과 동등한 수준으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검증한 보고서(위험평가 보고서 등)를 작성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며,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
- 21)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없는 육안관찰 시험법의 경우 점검기록 (Audit-trail)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?
- □ 육안관찰 시험결과 기록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진 또는 사진촬영에 준하는 수준의 근거자료(해당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)를 생성·보관하여야 하며, 그 근거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점검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함
- 22) 점검기록(Audit-trail)의 출력을 시험자가 해도 되는지?
- □ 점검기록(Audit-trail)의 출력 시 점검기록이 변경(수정, 삭제 등)되지 않는다면 시험자가 출력 가능하나, 중간검토자는 점검기록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자는 중간검토자의 업무를 관리·감독 하여야 함

- 23) 점검기록의 정기적 검토부서의 범위?
- □ 점검기록(Audit-trail)의 정기적인 검토 부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부서를 의미하며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
- 24) 특정 제품의 품질관리(QC) 데이터의 점검기록(Audit-trail)에 대한 정기검토를 해당 제품 담당인 품질보증(QA) 부서에서 실시한 다면,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?
- □ 점검기록(Audit-trail)의 정기검토 시 품질관리(QC) 부서에서 생성한 데이터가 품질보증(QA) 부서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
- 25) 시험결과 수정 등 변경이 허용된 영역의 전자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, 온/오프라인으로 사유를 문서화하였다면, 데이터 변경 시 사유를 기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?
- □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온/오프라인과 상관없이 장비특성을반영하여 사유를 기록하도록 기준서에 반영하여야 함
- 26) 컴퓨터시스템 변경 시 접근권한 부여의 의미는?
- □ 컴퓨터시스템의 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지를 의미함

- 27) 권한 있는 작업원에게만 컴퓨터화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사무실 내 공정관련 컴퓨터시스템을 별도의 장소에 분리해야 하는지?
- □ 사무실과 컴퓨터시스템 설치 장소를 구분하는 것 이외에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제한 방안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면 인정됨
- 28) 접근 권한 부여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이 품질데이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할 때 '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'의 범위는?
- □ 개별 업체의 조직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컴퓨터화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및 책임과 무관한 자로 자체적 으로 지정・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- 29) 컴퓨터시스템 설비 기능상의 한계로 개별 아이디(ID)가 부여되지 않을 때 하나의 아이디(Administrator, Operator 등)를 공유해서 사용해도 되는지?
- □ 컴퓨터화 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개별로 아이디(ID)를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비를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
- 30) 조회용 아이디(ID)의 사용이 가능한지?
- □ 컴퓨터화 시스템은 데이터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조회용 아이디(ID)가 데이터의 생성, 변경및 삭제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함

- 31) 자동으로 시간이 동기화되지 않는 자동화장치를 오프라인 으로 시간조정 하고, 시간 동기화 기록만 추적관리 가능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지?
 - 예) 기밀도 시험기, pH측정기, 동결건조기, 멸균기 등의 경우 사용일지(Logbook)를 사용하여 기기관리번호, 기기명, 사용자, 사용일자, 사용내역 등을 기록

32) 휴대폰을 표준시계로 인정 가능한지?

- ⇒ 휴대폰을 표준시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, 휴대폰의 기능에 따라 시간이 주기적 으로 자동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정기적 교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함
- 33) 시스템 변경 발생 시 데이터 복구할 수 있는 장치 보유 여부에 대한 의미는?
- ⇒ 시스템 변경 시 데이터 완전성 요건(ALCOA)이 보증되도록 데이터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
- 34) 데이터 백업(Back-up)을 데이터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수행하고, 그 백업된 데이터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검토하는 것은 가능한지?
- □ 데이터 백업(Back-up)의 주체는 업체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타당하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, 백업 데이터의 정기적 점검은

데이터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

- 35) 백업(Back-up)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, 정확성 및 데이터 복구 능력 확인의 주체와 적절한 주기는 ?
- □ 백업(Back-up) 데이터의 완전성 점검 부서는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, 점검주기는 위험관리(Risk Assessment)를 통해 각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
- 36) 이미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일부 자동기록장치 중 데이터 복구 설계를 현 상황에서 추가하기 힘든 경우, 데이터 백업절차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?
- □ 데이터 복구 장치가 없다면 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대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. 다만, 데이터 복구 장치가 내장된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
- 37) 기기의 갑작스러운 고장(Shut-down) 등으로 마지막 백업(back-up) 이후 데이터가 손실되었을 경우, 손실된 데이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
- ⇒ 적합한 백업(Back-up)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데이터 손실은 있을 수 없으며,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은 인정 불가

4. 평가기준 '5.1 문서의 작성'

- 1) 생성되는 모든 문서의 발행, 개정, 회수 이력관리를 실시해야 하는지?
- ⇒ GMP 준수를 위한 모든 문서는 이력관리를 실시하여야 함
- 2) 문서의 정기검토 후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문서의 정기개정을 실시해야 하는지?
- □ 문서는 정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이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
- 3) 서식 및 기록서의 복사 권한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완전성 관리 위반인지?
- ▷ 사본을 발급한 사람, 발급된 날짜, 배포한 사본마다 일련번호 지정 등의 사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데이터 완전성 관리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임

5. 평가기준 '5.2 문서의 관리'

- 1) 문서 보관장소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검증방법?
 - 문서보관 관리자에 대한 임명, 보관절차, 관리자 부재 시 대체자 임명, 시건장치 등의 절차만 있으면 충분한지?
- □ 문서보안 관리의 적절성은 사용한 시스템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 관리방법의 취약점을 찾고 조치방안을 마런하는 등 타당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(예: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가능 여부 등)
- 2)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기록물의 적절한 보관기간은?
- □ GMP 준수를 위한 모든 기록문서는 해당 제품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의약품 품목허가(신고) 사항 및 변경사항을 뒷받침 해주는 기초데이터를 포함한 중요 문서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(신고)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
- 3) 규격서, 지시서, 절차서 이외에 기록서의 경우에도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기록물을 전자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인지?
 - 규격서, 지시서, 절차서 및 기록서의 원본 또는 원본기록의 정확한 재생산본과 같은 사본이 종이문서인 경우 전자기록으로 변환해야 하는 것인지?
- ⇒ GMP 준수를 위한 규격서, 지시서, 절차서 및 기록서의 종이문서는 전자 기록으로 변환하거나 소실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백업(Back-up) 및 점검기록(Audit-trail)의 생성이 가능한 방법을 제외 하고 기록서에 대해서도 정본(True Copy)으로 관리해야 함

6. 평가기준 '7.1 시험관리'

- 1) 중간검토자가 기록하는 '상세한 검토 기록'의 형태는?
- □ 위험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검토 기록의 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시험결과와 시험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
- 2) 시험 데이터를 품질관리(QC) 팀장이 검토하고 품질보증(QA)부서 책임자가 승인하는 경우, QC 팀장이 점검기록(Audit-trail) 까지 모두 포함하여 검토하였을 때, QA 책임자가 점검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?
- ⇒ 중간검토자는 시험 결과값의 점검기록(Audit-trail)까지 모두 검토 하였다면 최종 승인자는 점검기록을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, 최종 승인자는 중간 검토자의 점검기록 검토 업무를 관리·감독 하여야 함
- 3) 규정된 절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동적분을 관리자가 수행했다면 정상적인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?

- 4) 허가사항에 시스템적합성 항목이 없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적합성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하는지?
- □ 허가사항 중 기준 및 시험방법에 시스템적합성이 없는 경우에도 자체 적으로 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데이터 완전성을 관리하여야 함
- 5) 동물시험에 사용한 동물의 적합성 보증의 근거자료 범위?
 - 입고 동물의 수량, 건강상태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하면 적 합성 보증의 근거자료로 가능한지
- 6) 동물시험 시 사용이력 추적 가능한 근거자료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근거자료로 사진촬영 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?
 - 사진촬영으로 근거자료를 남길 경우 시험 과정별(투여, 채혈 등)로 대표성을 나타내는 사진 1장만 촬영해도 가능한지?
- □ 시험결과의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사진 또는 사진촬영에 준하는 수준의 근거자료(해당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)를 생성·보관 하는 것이 필요함
- □ 근거사진의 수량은 동물 사용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준을 업체 자체적으로 정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

- 7) 관리번호가 부여된 카메라로 사진촬영 시 생성된 사진데이터도 저장, 편집, 백업 등 데이터 추적관리대상으로 포함되는지? 또한, 근거사진의 메타데이터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는지?
- □ 관리번호를 부여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 시 생성되는 데이터는 추적관리 대상에 포함되며, 근거사진의 메타데이터(촬영일시, 데이터 일련번호, 촬영자 등)도 관리하여야 함

- 8) 세포관찰을 위한 현미경용 카메라의 경우 사진파일에 촬영일시가 포함되지 않을 때 사진 인쇄본에 촬영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가능한지?
- 라리번호를 부여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 시 생성되는 데이터는 추적관리 대상이며, 이 때 인쇄본을 정본으로 관리하고자하는 경우 원본의 모든 메타데이터(촬영일시, 데이터 일련번호, 촬영자 등)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

- 9) 중간검토자가 확인하여 시험결과를 기술하는 것이 사진 촬영에 준하는 수준의 근거자료로 인정 가능한지?
 - 1차 확인된 미생물시험 결과를 2차 확인자(Second person)에 의한 실제 플레이트 집락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
 - 육안확인 시험(성상, 탁도 등), 표시자재 시험(성상, 치수 등) 등 사진촬영이 어려운 경우
 - 무균구역 내에서 사진촬영이 어려운 경우
- □ 무균구역 등과 같이 물품 반입 시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기구의 반입 방안(랩핑 및 소독)을 마련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거자료를 생성하여야 함
- 10) 미생물시험의 경우 미생물 집락관찰결과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진 촬영에 준하는 수준의 근거자료(해당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)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?
 - 세포 배양 공정에서 세포 성장 상태 및 오염 여부를 확인한 Output parameter(예, pH, 산소, 대사산물(Metabolite)) 값을 전자데이터로 보관한다면 사진에 준하는 수준의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?

- 11) 제품 품질시험이 아닌 미생물시험(환경모니터링, 제조용수 모니 터링 등)의 경우에도 미생물 배양, 집락관찰결과의 근거자료로 사진이 필요한 것인지?
- □ GMP 준수를 위한 모든 시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사진촬영에 준하는 수준의 근거자료(해당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)를 생성·보관하는 것이 필요함
- □ 다만, 제품 품질시험이 아닌 환경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미생물시험(환경모니터링, 제조용수 모니터링 등)의 경우에는 위험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근거자료의 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

- 12) 무균공정 밸리데이션 수행 시 모든 검체(바이알)에 대해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지?
 - 배양기 내부에 있는 전체 배지를 사진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 배지의 일부를 채취하여 채취된 검체를 사진촬영하여 근거로 남기는 것이 가능한지?
- □ 무균공정 밸리데이션 수행 시 배양기에 넣기 전, 후 시험결과(육안 관찰기록 작성 시)에 대한 입증자료는 위험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의 수준을 설정하여 생성・보관할 수 있음

- 13) 엔도톡신 겔화법 시험결과에 대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도 인정 가능한지?
 - 엔도톡신 겔화법을 광학적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?
- □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,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함
 - * [참고]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[별표1] 6.3 시험방법 밸리데이션

- 14) 주사제 이물검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한 사진을 보관하여야 하는지?
- ⇒ 수동 이물 검사에 대한 시험결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업체 자체적으로 타당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진 또는 사진에 준하는 수준의 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함(예: 전체 이물검사 과정의 일정 시간대별 또는일정 단위수량별로 검체를 채취하여 근거자료를 생성·보관)
- ⇒ 중장기적으로는 시험결과에 대한 근거를 보증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(예 : 자동이물검사기 도입) 등 검토 필요함

7. 평가기준 '13. 자율점검'

- 1) 데이터 완전성 관리 자체 실사는 GMP 내부감사(자율점검)에 포함하여 실시해도 되는지?
- □ 데이터 완전성 관리에 대한 자체 실사는 GMP 자율점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자율점검에 포함 가능함

2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이행 관련 질의·답변

- 1) 행정지시사항의 이행 대상 등 적용범위는?
- ➡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(위·수탁자 포함),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가 동 지침의 적용대상임. 다만,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평가 등의 경우에는 해외제조소가 위치한 국가의 자국 규정 등에 따라 운영 되고 있는 상황이 금번 식약처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
- 2) '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'과 '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' 중 어떤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?
- □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'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'을 적용해야 함
- 3) 수입의약품은 해외제조소 외 국내 수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?
- □ 국내 수입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나,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원은 적용대상임

- 4) 해외제조소가 해당 자국 규정(FDA, PIC/S, MHRA, EMA 등)에 따라 데이터완전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약처의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추가로 평가 하는지?
- □ 자국 규정 중 식약처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평가 가능함
- 5)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이 평가지침에 적용되는지?
- ⇒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적용 대상 아님
- 6) 이 행정지시사항의 시행일은 언제인지?
- ⇒ 이 행정지시사항은 '20.8.17.부터 적용하여 시행함

동 질의답변사항은 업체에서 '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'에 대한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